

수신자 내부결재
(경유)

제 목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

- 1. 정보공개청구(접수번호 7846707_2018.07.19.) 관련입니다.
- 2. 해당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하여 내부종결 처리하고자 합니다.

가. 정보공개 청구 처리

□ 접수번호 4846707(2018.07.19.)

○ 청구내용: 정보공개청구서 참조

○ 종결 처리 근거: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하는 경우 종결 처리 가능

- 해당 청구인의 동일한 청구로 이미 5차례 종결 처리함

- 1차 종결 처리: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(서울장학재단-227, 2018.03.30.)
- 2차 종결 처리: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(서울장학재단-239, 2018.04.02.)
- 3차 종결 처리: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(서울장학재단-247, 2018.04.04.)
- 4차 종결 처리: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(서울장학재단-322, 2018.04.30.)
- 5차 종결 처리: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종결 처리의 건(서울장학재단-479, 2018.07.02.)

제6조(정보공개 청구방법 등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2.12.>

1.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

2. 진정(陳情)·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

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13.>

1.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제3항 각 호의 사유

2.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

⑤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다시 청구한 경우

2.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[전문개정 2014.5.28.]

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이사장

담당 조혜민

사무국장

전결
종연숙

협조자

시행 서울장학재단-549 (2018. 7. 20.) 접수 ()

우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, 2층(공덕동) / <http://www.hissf.or.kr>

전화 070-8667-3995 /전송 070-4133-2258 / mini@hissf.or.kr / 부분공개(6)